감 정 평 가 서

APPRAISAL REPORT

건 명:	조강희 소유물건(2025타경62747)
의 뢰 인: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사법보좌관 강우규
감정평가서번호:	KB250410-02-030



이 감정평가서는 감정평가 의뢰목적 외의 목적에 사용하거나 타인(의뢰인 또는 제출처가 아닌 자)이 사용할 수 없을 뿐 아니라 복사, 개작(改作), 전재(轉載)할 수 없으며 이로 인한 결과에 대하여 감정평가법인등은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주)감정평가법인 국토 경기북부지사



(구분건물)감정평가표

본인은 감정평가에 관한 법규를 준수하고 감정평가이론에 따라 성실하고 공정하게 이 감정평가서를 작성하였기에 서명날인합니다.

감 정 평 가 사
최 재 규 (인)

(주)감정평가법인 국토 경기북부지사 지사장 곽세근 (서명또는인)

감정평가액	사억팔천이백만원정(₩482,000,000.-)			
의 뢰 인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사법보좌관 강우규	감정평가 목 적	법원경매	
제 출 처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경매13계	기준가치	시장가치	
소 유 자 (대상업체명)	조강희 (2025타경62747)	감정평가 조 건	-	
목록표시 근 거	귀 제시목록	기준시점	조 사 기 간	작 성 일
기 타 참고사항	-	2025.04.14	2025.04.11 ~ 2025.04.14	2025.04.15

감정평가내용

공부(公簿)(의뢰)		사 정		감 정 평 가 액	
종 류	면적(㎡) 또는 수량	종 류	면적(㎡) 또는 수량	단 가	금 액
아파트	1개호 이	아파트	1개호 하 여	- 백	482,000,000
합 계					₩482,000,000

심사확인

본인은 이 감정평가서에 제시된 자료를 기준으로 성실하고 공정하게 심사한 결과 이 감정평가 내용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므로 이에 서명날인합니다.

심 사 자 : 감 정 평 가 사 (인)

감정평가액 산출근거 및 결정 의견

Ⅰ. 감정평가의 개요

1. 감정평가의 목적

본건은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행신동 소재 '백양고등학교' 남서측 인근에 위치하는 햇빛마을아파트 제1812동 제3층 제302호(아파트)로서,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의 경매 목적의 감정평가입니다.

2. 본건 개요

본건 전경


소 재 지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행신동 895 [도로명주소]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성신로 77
건물명 및 층·호수	햇빛마을아파트 제1812동 제3층 제302호
건물의 구조	철근콘크리트 벽식조 20층
사용승인일자	1998.07.20
주 용 도	아파트

기호	해당 동/층/호수	전유면적 (㎡)	공용면적 (㎡)	공급면적 (㎡)	전용률 (%)	대지권 (㎡)	집합건축물대장상 용 도
가	1812/3/302	84.79	25.0021	109.7921	77.2	41.6808	아파트

[출처 : 귀 제시목록 및 관련 공부]

감정평가액 산출근거 및 결정 의견

3. 기준시점 및 실지조사 기간

가. 기준시점 결정 및 그 이유

본건의 기준시점은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9조 제2항에 의거하여 가격조사 완료일인 2025년 04월 14일입니다.

나. 실지조사 실시기간 및 그 내용

본건에 대하여 2025년 04월 11일부터 2025년 04월 14일까지 실지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실지조사 시 본건의 존재 여부, 본건의 공부 및 의뢰된 목록과 현황과의 부합 여부, 본건의 특성, 소유권 및 소유권 이외의 권리에 대한 권리관계의 확인 및 기타 본건의 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제반사항을 조사하였습니다.

4. 기준가치 및 감정평가조건

가. 기준가치 결정 및 그 이유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5조 제1항에 따라 시장가치를 기준으로 평가하였습니다.

나. 감정평가의 조건

해당사항 없습니다.

감정평가액 산출근거 및 결정 의견

5. 기타 검토 및 참고 사항

가. 본건의 소재지 및 면적 등은 귀 법원이 제시한 목록 및 관련 공부 등에 의거하였습니다.

나. 본건은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16조에 따라 일괄평가가 원칙으로 토지 · 건물의 구분평가는 적정하지 않으나, 귀 법원의 요청에 의거 본건의 평가가액을 토지가액과 건물가액으로 배분하여 구분건물 평가명세표에 기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 본건은 폐문 및 이해관계인의 부재 등으로 인해 내부 확인이 곤란하여, 부득이 집합건축물대장상 건축물현황도, 평가전례, 탐문조사 및 외부관찰 등에 의하여 통상적인 상태를 상정하여 감정평가 하였는바, 경매 업무 진행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정평가액 산출근거 및 결정 의견

II. 감정평가의 근거 및 감정평가 방법의 적용

1. 감정평가의 근거

가. 근거 법령

본건 감정평가는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및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등 감정평가 관련 제 법령에 근거하였습니다.

나.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7조 [개별물건기준 원칙 등]	① 감정평가는 대상물건마다 개별로 하여야 한다. ② 둘 이상의 대상물건이 일체로 거래되거나 대상물건 상호 간에 용도상 불가분의 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일괄하여 감정평가할 수 있다. ③ 하나의 대상물건이라도 가치를 달리하는 부분은 이를 구분하여 감정평가할 수 있다. ④ 일체로 이용되고 있는 대상물건의 일부분에 대하여 감정평가하여야 할 특수한 목적이나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부분에 대하여 감정평가할 수 있다.
제11조 [감정평가방식]	감정평가법인등은 다음 각 호의 감정평가방식에 따라 감정평가를 한다. 1. 원가방식: 원가법 및 적산법 등 비용성의 원리에 기초한 감정평가방식 2. 비교방식: 거래사례비교법, 임대사례비교법 등 시장성의 원리에 기초한 감정평가방식 및 공시지가기준법 3. 수익방식: 수익환원법 및 수익분석법 등 수익성의 원리에 기초한 감정평가방식
제12조 [감정평가방법의 적용 및 시산가액 조정]	① 감정평가법인등은 제14조부터 제26조까지의 규정에서 대상물건별로 정한 감정평가방법(이하 "주된 방법"이라 한다)을 적용하여 감정평가하여야 한다. 다만, 주된 방법을 적용하는 것이 곤란하거나 부적절한 경우에는 다른 감정평가방법을 적용할 수 있다. ② 감정평가법인등은 대상물건의 감정평가액을 결정하기 위하여 제1항에 따라 어느 하나의 감정평가방법을 적용하여 산정(算定)한 가액[이하 "시산가액(試算價額)"이라 한다]을 제11조 각 호의 감정평가방식 중 다른 감정평가방식에 속하는 하나 이상의 감정평가방법(이 경우 공시지가기준법과 그 밖의 비교방식에 속한 감정평가방법은 서로 다른 감정평가방식에 속한 것으로 본다)으로 산출한 시산가액과 비교하여 합리성을 검토하여야 한다. 다만, 대상물건의 특성 등으로 인하여 다른 감정평가방법을 적용하는 것이 곤란하거나 불필요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감정평가법인등은 제2항에 따른 검토 결과 제1항에 따라 산출한 시산가액의 합리성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주된 방법 및 다른 감정평가방법으로 산출한 시산가액을 조정하여 감정평가액을 결정할 수 있다.

제16조 [토지와 건물의 일괄감정평가]	감정평가법인등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구분소유권의 대상이 되는 건물부분과 그 대지사용권을 일괄하여 감정평가하는 경우 등 제7조 제2항에 따라 토지와 건물을 일괄하여 감정평가할 때에는 거래사례비교법을 적용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감정평가액은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토지가액과 건물가액으로 구분하여 표시할 수 있다.

2. 감정평가방법의 적용

가. 본건은 건물부분과 그 대지사용권이 일체로 거래되는 구분건물로서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7조 제2항, 제12조 제1항 및 제16조에 따라 구분소유권의 대상이 되는 건물부분과 그 대지사용권을 일괄하여 거래사례비교법을 주된 방법으로 적용하였으며, 시장성 등이 높은 본건의 특성을 고려할 때 다른 감정평가방법을 적용하는 것이 불필요한 것으로 판단되는 바, 원가법 및 수익환원법으로 산출한 시산가액과의 비교를 통한 합리성 검토는 생략하였습니다.

나. 거래사례비교법은 대상물건과 가치형성요인이 같거나 비슷한 물건의 거래사례와 비교하여 대상물건의 현황에 맞게 사정보정, 시점수정, 가치형성요인 비교 등의 과정을 거쳐 대상물건의 가액을 산정하는 감정평가방법입니다.

감정평가액 산출근거 및 결정 의견

Ⅲ. 거래사례비교법에 의한 시산가액

1. 감정평가에 참고한 가격자료

가. 본건의 거래사례 및 평가사례(최근 3년 이내)

기호	전유면적 (㎡)	거래시점 및 평가시점	거래금액 및 평가액(원)	전유면적당 단가(원/㎡)	비고
가	해당사항 없습니다.				

[출처 :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및 감정평가정보체계(KAIS)]

나. 인근지역 거래사례

기호	소재지	건물명 및 동/층/호수	전유면적 (㎡)	거래시점 / 사용승인일	거래금액(원)	전유면적당 단가(원/㎡)
A	행신동 89*	햇빛마을아파트 1810/6/60*	84.79	2024.09.** / 1998.07.20	505,000,000	5,955,891
B	행신동 89*	햇빛마을아파트 1814/14/140*	84.9	2024.12.** / 1998.07.20	500,000,000	5,889,282

[출처 :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및 감정평가정보체계(KAIS)]

감정평가액 산출근거 및 결정 의견

다. 인근지역 평가사례

기호	소재지	건물명 및 동/층/호수	전유면적(㎡)	평가목적	기준시점 / 사용승인일	평가금액(원)	전유면적당 단가(원/㎡)
C	행신동 93*	햇빛마을아파트 1824/20/200*	84.79	법원경매	2023.11.** / 1998.07.30	492,000,000	5,802,571
D	행신동 90*	햇빛마을아파트 1901/14/140*	84.94	법원경매	2024.01.** / 1998.08.12	490,000,000	5,768,778

[자료출처 : 한국감정평가사협회 감정평가정보(KAPA HUB)]

라. 인근지역 내 유사부동산의 가치수준

유형	부동산 가치수준
아파트	전유면적당: 5,400,000원/㎡ ~ 6,000,000원/㎡수준 (층 · 향 · 면적 등에 따라 차이가 발생할 수 있음)

마. 경매 낙찰가율(최근 1년간 해당 지역 용도별 평균 낙찰가율)

지역 / 기간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행신동 2024년 04월 14일 ~ 2025년 04월 14일(1년 평균)			
구 분	고양시 덕양구		행신동	
	낙찰가율(%)	낙찰건수	낙찰가율(%)	낙찰건수
아파트	87.89	116	87.41	29

[출처 : 태인경매]

감정평가액 산출근거 및 결정 의견

2. 거래사례비교법에 의한 시산가액

가. 비교사례의 선정

최근 거래된 사례 중 본건의 인근지역에 위치하며, 가치형성요인이 유사하여 비교가능성이 높은 사례를 아래와 같이 선정하였습니다.

기호	소재지	건물명 및 동/층/호수	전유 면적 (㎡)	거래시점 / 사용승인일	거래금액(원)	전유면적당 단가(원/㎡)	대상 물건
A	행신동 89*	햇빛마을아파트 1810/6/60*	84.79	2024.09.** / 1998.07.20	505,000,000	5,955,891	가

나. 사정보정

인근지역의 정상적인 가치수준 대비 적정하게 거래된 것으로 판단되어 별도의 사정보정은 필요하지 아니합니다. (1.000)

감정평가액 산출근거 및 결정 의견

다. 시점수정

1) 개요

한국부동산원이 조사·발표한 전국주택가격동향조사(월간동향)의 아파트 매매가격지수를 활용하여 시점수정치를 산정하되, 기준시점의 매매가격지수가 미고시된 경우 기준시점과 가장 가까운 시점에 고시된 매매가격지수를 연장 적용하였습니다.

2) 아파트 매매가격지수

- 본건 기호 가 / 사례 기호 A

구 분	2024년 08월	2025년 03월
아파트 매매가격지수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89.5	89.1

※거래시점 : 2024.09.28, 거래시점 직전 월인 2024년 08월 지수를 적용하였습니다.

※기준시점 : 2025.04.14, 기준시점 직전 월인 2025년 03월 지수를 적용하였습니다.

3) 시점수정치 산정

대상 물건	비교 사례	구 분 (산정기간)	시점수정치 산정	시점수정치
가	A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2024.09.28~2025.04.14	89.1 / 89.5	0.99553

감정평가액 산출근거 및 결정 의견

라. 가치형성요인 비교

■ 구분건물(주거용) [본건 기호 가 / 사례 기호 A]

조 건	세부항목	격차율	비 고
단지 외부요인	대중교통의 편의성(지하철, 버스정류장)	1.00	본건과 거래사례는 동일 단지 내 소재하는바 제반 요인 동일함.
	교육시설 등의 배치		
	도심지 및 상업 · 업무시설과의 접근성		
	차량이용의 편리성(가로의 폭, 구조 등)		
	공공시설 및 편익시설 등의 배치		
	자연환경(조망 · 풍치 · 경관 등)		
단지 내부요인	시공업체의 브랜드	1.00	본건과 거래사례는 동일 단지 내 소재하는바 제반 요인 동일함.
	단지 내 총 세대수 및 최고층수		
	건물의 구조 및 마감상태		
	경과연수에 따른 노후도		
	단지 내 면적구성(대형 · 중형 · 소형)		
	단지 내 통로구조(복도식/계단식)		
호별요인	층별 효용	0.96	본건은 거래사례 대비 층별 효용 등에서 열세함.
	향별 효용		
	위치별 효용 (동별 및 라인별)		
	전유부분의 면적 및 대지권의 크기		
	내부 평면방식(베이)		
	간선도로 및 철도 등에 의한 소음		
기타요인	기타 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1.00	대체로 유사함.
가치형성요인 비교치	**1.00 x 1.00 x 0.96 x 1.00**	**0.960**	-

감정평가액 산출근거 및 결정 의견

마. 거래사례비교법에 의한 시산가액

1) 본건의 적용단가

기호	거래사례 단가 (원/㎡)	사정 보정	시점 수정	가치형성요인 비교치	산정단가 (원/㎡)	적용단가 (원/㎡)
가	5,955,891	1.000	0.99553	0.960	5,692,097	5,690,000

2) 본건의 시산가액

기호	동/층/호수	전유면적 (㎡)	적용단가 (원/㎡)	산출금액 (원)	시산가액 (원)
가	1812/3/302	84.79	5,690,000	482,455,100	482,000,000

감정평가액 산출근거 및 결정 의견

Ⅳ. 감정평가액 결정 의견

인근 유사부동산의 가격수준, 감정평가 목적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16조에 의한 시산가액을 본건의 감정평가액으로 결정하였으며, 본건의 특성 등을 고려할 때 다른 감정평가방법을 적용하는 것이 불필요한 경우에 해당되어 원가법 및 수익환원법으로 산출한 시산가액과 비교를 통한 합리성 검토는 생략하였습니다.

기호	소 재 지	건물명 및 동/층/호수	전유면적 (㎡)	대지권 (㎡)	감정평가액(원)	비고
가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행신동 895	햇빛마을아파트 제1812동 제3층 제302호	84.79	41.6808	482,000,000	아파트
합 계			482,000,000			

끝.

KB250410-02-030

구분건물 감정평가명세표

일련번호	소재지	지 번	지 목 및 용 도	용도지역 및 구 조	면 적 (㎡) 공 부	면 적 (㎡) 사 정	감정평가액	비 고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행신동 [도로명주소]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성신로 77	895 햇빛마을 아파트 제1812동	아파트	철근콘크리트 벽식조 20층				
				1층	412.333			
				2층~4층 (각)	409.925			
				5층~20층 (각)	404.101			
				지1층	422.320			
1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행신동	895	대	제3종일반주거지역	42,646.2			
가				(내) 철근콘크리트 벽식조 제3층 제302호	84.79	84.79	482,000,000	비준가액 (공용면적 포함)
				1. 소유권 대지권	41.6808 / 42,646.2 x	41.6808		
						토지·건물	배분내역	
						토 지 :	289,200,000	
						건 물 :	192,800,000	
	합 계						₩482,000,000.-	

이 하 여 백

구분건물 감정평가요항표

(1) 위치 및 주위환경 (2) 교통상황 (3) 건물의 구조 (4) 이용상태
(5) 설비내역 (6) 토지의 형상 및 이용상태 (7) 인접 도로상태 등
(8)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9) 공부와의 차이 (10) 기타참고사항(임대관계 및 기타)

(1) 위치 및 주위환경

본건은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행신동 소재 '백양고등학교' 남서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아파트 단지, 각급 학교, 관공서, 각종 근린생활시설 등이 소재하는 주거지대로서, 제반 주위환경은 대체로 보통임.

(2) 교통상황

본건까지 차량 진출입 가능하며, 인근에 노선버스정류장이 소재하는 등 제반 교통상황은 대체로 보통임.

(3) 건물의 구조

철근콘크리트 벽식조 20층 건물 내 제3층 제302호로서,
(사용승인일: 1998.07.20)

외벽: 시멘트몰탈위 페인팅 마감 등
창호: 하이샷시 창호 등임.

(4) 이용상태

아파트로 이용중임.

(5) 설비내역

기본적인 위생 및 급배수설비, 열병합에 의한 지역난방설비, 소화설비, 승강기설비 등이 구비되어 있음.

구분건물 감정평가요항표

(1) 위치 및 주위환경 (2) 교통상황 (3) 건물의 구조 (4) 이용상태
(5) 설비내역 (6) 토지의 형상 및 이용상태 (7) 인접 도로상태 등
(8)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9) 공부와의 차이 (10) 기타참고사항(임대관계 및 기타)

(6) 토지의 형상 및 이용상태

인접필지 대비 대체로 등고평탄한 사다리형의 토지로서, 현황 아파트 건부지로 이용중임.

(7) 인접 도로상태등

본건 단지 내 도로를 통하여 외곽 공도와 접함.

(8)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제3종일반주거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화정능곡택지개발), 중로1류(폭 20m~25m)(접합), 중로2류(폭 15m~20m)(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2024-11-12)(전부제한구역 [도시지역{주거,상업,공업,녹지(자연취락지구)}및주거밀집지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2024-07-03)(백양고등학교)<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2024-07-03)(성신초등학교)<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백양중학교)<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백양초등학교)<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지도중학교)<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지도초등학교)<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절대보호구역(2024-07-03)(백양고등학교)<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9) 공부와의 차이

없 음.

(10) 기타참고사항(임대관계 및 기타)

임대관계: 미상임.
기타사항: 없 음.

광 역 위 치 도

소 재 지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행신동 895 햇빛마을아파트 제1812동 제3층 제302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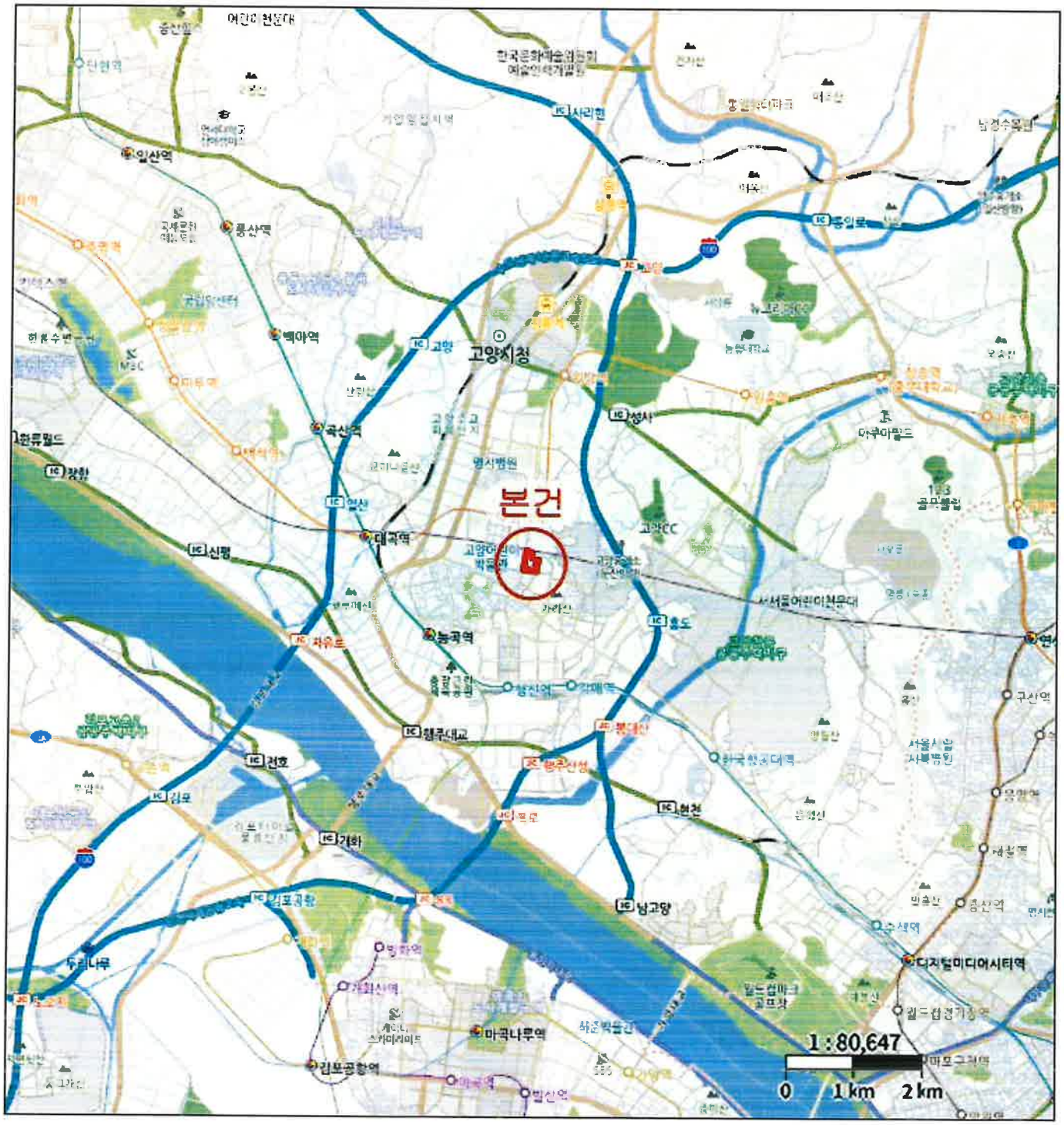

위 치 도

소 재 지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행신동 895 햇빛마을아파트 제1812동 제3층 제302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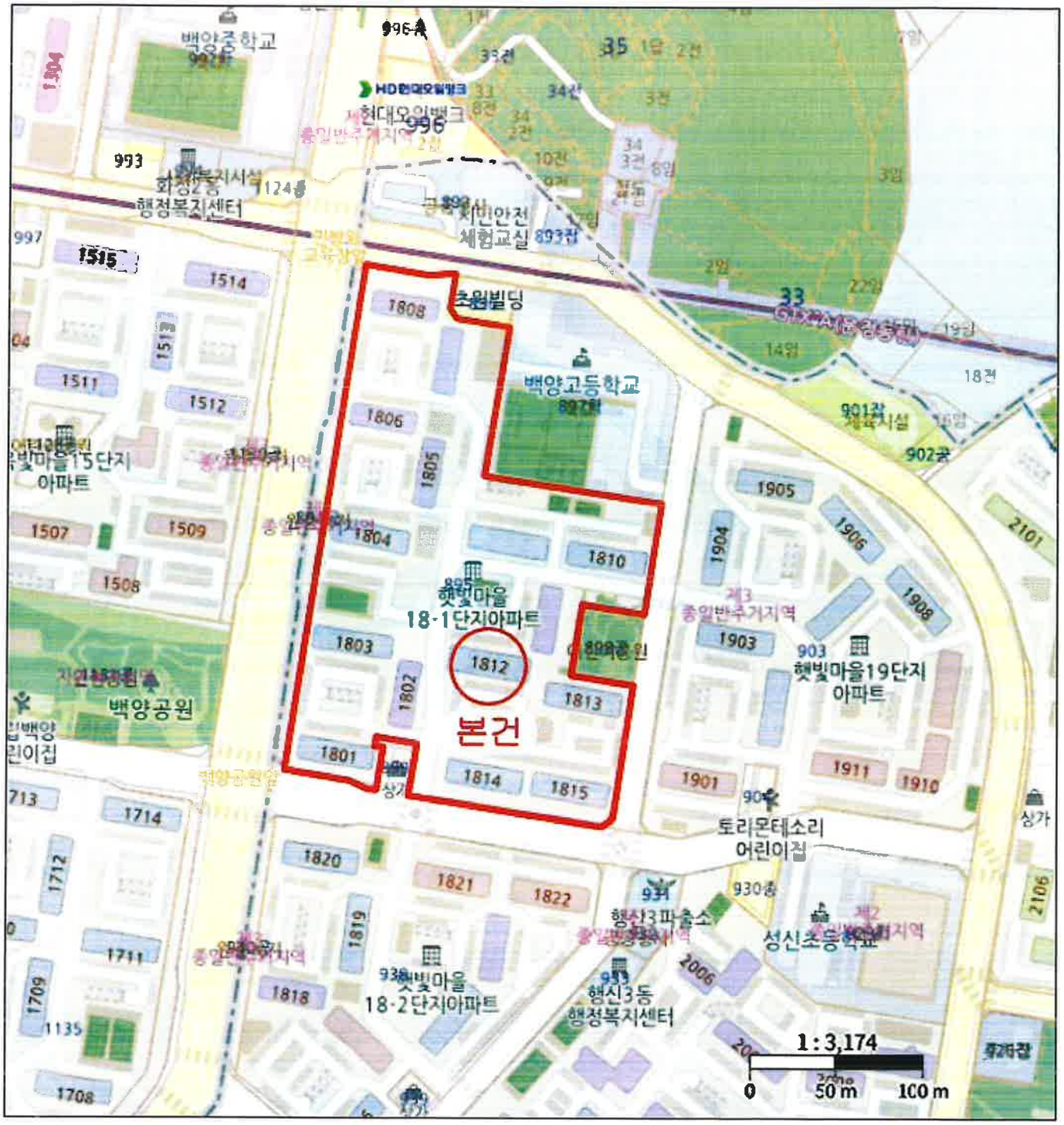

내 부 구 조 도

소 재 지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행신동 895 햇빛마을아파트 제1812동 제3층 제302호

< 호별배치도 및 내부구조도 >



사 진 용 지



본건 소재 건물 전경



1층 공동 출입구 전경

사 진 용 지



본건 현관 출입구 전경



단지 전경